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죄 · 모욕죄 처벌 강화조항 신설〉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99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2
2. 현행법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개관	3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현정의원 등 11명
2. 발 의 일: 2024. 7. 22.
3. 회 부 일: 2024.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나 특정 이슈를 자극적으로 편집한 영상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이런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이 법에는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제311조의2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 모욕죄”를 신설함. 제1항은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i)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제1항¹⁾)를 범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1호), (ii)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제2항²⁾)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2호), (iii) 모욕죄(제311조³⁾)를 범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호).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제1호의 죄(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신설>	제311조의2(통신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 모욕) ①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1. 제307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 <u>2. 제307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u> <u>3. 제31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u> <u>②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u>
--	--

2. 현행법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개관

현행법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음.

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⁴⁾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제310조에서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고 있음.

②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제2항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4)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을 요함(대법원 2011. 8. 18. 2011도6904).

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③ (사자 명예훼손죄) 「형법」 제308조⁵⁾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임.

④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9조⁶⁾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⑤ (모욕죄⁷⁾) 「형법」 제311조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

5)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함(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제11판, 박영사, p.202) 따라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때에는 모욕죄에 해당함(대법원 1989. 3. 14. 88도1397).

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임.

⑥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8)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

<현행법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처벌 규정>

구분		근거 규정	처벌대상	법정형
명예훼손	사실 적시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금고 •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자의 명예훼손	사실 적시	처벌대상 아님		

- 8)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허위 사실 적시	형법 제308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 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금고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 적시	형법 제309조 제1항	<u>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 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 판물에 의하여</u>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7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형법 제309조 제2항	<u>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 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 하여</u>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 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금고 •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 망을 통한 명예훼손	사실 적시	정보통신 망법 제70조 제1항	<u>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u> 공공연하게 사실 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 를 훼손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정보통신 망법 제70조 제2항	<u>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u> 공공연하게 거짓 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 의 명예를 훼손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1)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통신매체의 비대면성 및 전파성으로 인하여 침해행위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행하여질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더욱이, 통신 기술의 발달 및 인터넷 상용화에 따라 통신매체를 통한 소위 ‘악플’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각종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가 증가하고,⁹⁾ 이를 토대로 한 집단따돌림이나 소위 ‘사이버레

커’¹⁰⁾ 등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확대재생산이 행해짐에 따라,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거나 자살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통신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엄하게 처벌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인정됨.

(2)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의 구성요건 중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11)에 따른 컴퓨터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체제인 “정보통신망”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보통신망법」 제70조¹²⁾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명예훼손 처벌규정인 개정안과 구성요건에서 상당 부분 겹치고 있음.

9) “배구선수·인터넷BJ 잇따라 극단적 선택…‘악플’ 언제까지?”(MBC뉴스, 2022. 2. 17.), “열여섯 여고생 벼랑끝 내몬 ‘온라인 집단 따돌림’”(동아일보 2019. 7. 2.),

10) ‘사이버 레커’란 교통사고 현장에 나타나는 레커(Wrecker·견인차)처럼 이슈가 생기면 재빨리 짜깁기 영상을 만들어 조회 수를 올리는 유튜버를 이르는 신조어임.

11) 「정보통신망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2)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과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 비교>

구분		처벌 요건		법정형
개정안	사실 적시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사실 적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 3년 이하의 징역 •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의 유무에 따라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고,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개정안이 적용되게 되는데, 비방할 목적의 유무에도 양자 간 법정형에 사실상 차이가 없음(개정안에 따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 이는 법정형의 형평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의 “우편”을 통한 명예훼손죄와 현행 「형법」상 “신문, 잡지”를 통한 명예훼손인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비교해 보면, “우편”과 “신문, 잡지” 간 전파성의 우위를 판단하기 어렵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추가적인 구성요건으로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법정형이 거의 같거나
개정안이 보다 높은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역시 법정형의 형평
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음.

<개정안과 현행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비교>

구분		처벌 요건		법정형
개정안	사실 적시	우편 ,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u>3,000만원 이하의 벌금</u>
	허위사 실적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u>5,000만원 이하의 벌금</u>
현행법 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 적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 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u>700만원 이하의 벌금</u>
	허위사 실적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u>1,500만원 이하의 벌금</u>

셋째, 최기상위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¹³⁾은 사실적
시 명예훼손죄(제307조제1항) 및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제309조제1항)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며,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개
정하여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 등을

13) 의안번호 제2203388호, 제안일: 2024. 8. 29.

들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거나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¹⁴⁾이 다수 발의된 바 있음.

반면, 개정안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대하여 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보다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려는 것인바, 입법 과정에서는 이러한 입법 흐름을 참작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정리하면, 「형법」에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가중처벌하려는 개정안은 통신매체의 비대면성·빠른 전파성에 기인한 침해행위의 특성 및 피해 회복 가능성,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의 형평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다른 법률안과 입법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됨.

문 의

02)6788-5053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안(의안번호 제2108530호, 제안일 2021. 3. 4.), 김용민의원안(의안번호 제2111649호, 제안일 2021. 7. 22.), 박주민의원안(의안번호 제2112050호, 제안일 2021. 8. 13.)]